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959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95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222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680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종중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나도식품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송림에너지)

판결 선고 2016. 3. 24.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2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참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C를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수권 등을 의결한 원고 종중의 2012. 5. 20.자 결의에 중대한 흠이 있어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부존재한 결의를 추인한 원고 종중의 2012. 11. 22.자 결의 또한 추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종중은 종전부터 매년 음력 10. 9. 시제를 올리고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해 오는 관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종중이 2012. 11. 22.(음력 10. 9.) E에 대한 시제를 마친 후 함께 모여 'B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C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며 이 사건 소를 계속 수행'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가사 원고 종중의 2012. 5. 20.자 결의에 피고 주장과 같은 중대한 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은 위 2012. 11. 22.자 결의 및 위 결의를 통해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C의 이 사건 소송 수행으로 인해 모두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종중의 실체,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의 대표자 선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 확정과 소집통지 방법, 권리보호이익,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종중 재산에 관한 소제기의 특별수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를 불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원고 종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거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원고 종중 명의의 2008. 1. 14.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 명의신탁 해지의 성격,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피고가 원고 종중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억 원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종중에게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B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도 없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한 이상 B이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